6. 조교임용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(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) 조교의 임용과 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조교는 그 직무와 신분에 따라 행정조교, 연구조교로 구분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 및 조교의 직무) ① 행정조교라 함은 학과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실험실습 등 교육보조업무 및 학교부속기관에서 그 기관의 전문 업무보조를 원칙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② 연구조교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(휴직교원 제외)의 연구보조업무를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③ 부서의 장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교를 추천할 수 있는 각 학과장, 교학처장 등을 말한다.<2013.03.01 개정>

제4조(정원) ① 연구조교는 해당 학기 재직 중인 교원을 기준으로 정한다.
② 행정조교의 정원은 조교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교학처장이 검토하여 매 학기 배정인원을 정한다.<2013.03.01 개정>

제5조(자격) ① 연구조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, 전 학기 평점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.
② 행정조교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, 품행이 방정하고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.

제6조(임용) 조교는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<2013.03.01 개정>

제7조(임기) 조교의 임용기간은 1학기로 하되 6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절차를 따라야 하나 제8조의 구비서류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구비서류) 조교의 신규임명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조교신청서 1부
2.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1부

제9조(급여) 행정조교는 매월 수당을 지급하되 학기당 수당지급 총액이 당해 학기의 등록금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(요식과 절차의 요청) ① 조교에게 발급되는 제 증명은 제2조의 구분에 따라 직명을 표시한다.
② 조교에게 발급되는 제 증명은 교학처장 명의로 발행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확인을 첨가할 수 있다.<2013.03.01 개정>

제11조(임명취소) 조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제12조(장학금의 반환) 제11조에 의하여 임명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임기 중에 해임을 원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잔여임기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조교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7">조교신청서</td><td rowspan="3">사진
(3×4)</td></tr>
<tr><td>성명</td><td colspan="2">(한자:)</td><td>성명(영문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학과 과정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20 – 학기 학적상태
(해당사항에 ○표 하시오)</td><td>재학</td><td>수료</td><td>휴학</td><td>복학
예정</td><td>휴학
예정</td></tr>
<tr><td>학번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조교구분(유의사항 참고)</td><td colspan="2">근무부서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행정A</td><td>행정B</td><td>연구A</td><td>연구B</td><td>근무지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이력사항</td></tr>
<tr><td>년</td><td>월</td><td>일</td><td colspan="4">학력 및 경력사항</td><td>발령청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위 본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조교임용규정 제5조(자격)에 의하여 ( )조교로 지원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. (첨부: 성적증명서 1부)
위원인 ㊞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위의 신청에 의하여 상기인을 조교로 추천합니다.
추천인 학과장 ㊞

교학처장</td></tr>
</table>